

2015년 단체협약서

2015년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군산의료원지부 단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시행하기로 한다.

- 다 음 -

2015년도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협약과 지방의료원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지부단체협약에 수정·보완·삽입한다.

1.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결원 인력의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확인하여 정규직 T/O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협 39조제5항 삽입)

2.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① 직장내 폭언·폭행 예방 조치 (단협 제66조 제1항 삽입)

가. 병원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내 폭언·폭행 금지에 대한 직원 인권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나. 병원은 쾌적한 근무환경과 직원간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내 폭언·폭행 및 성차별적 언어를 금지한다.

다. 병원은 신규직원 교육이나 정기적인 직원교육, 혹은 원내통신망을 통해 직장내 폭언·폭행금지에 대한 병원의 정책과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조희나 원내방송 등을 이용하여 직장내 폭언·폭행금지 캠페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라. 병원은 직장내 폭언·폭행관련 신고센터 혹은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하고, 폭언·폭행예방 교육과 상담, 조사,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담당자를 둔다.

② 직장내 폭언·폭행 발생에 대한 피해자 조치 (단협 제66조제2항 삽입)

가. 병원은 직장내 폭언·폭행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 직장내 폭언·폭행을 담당하는 고충처리기구나 담당부서에 피해사실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나. 병원은 병원내 폭언·폭행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며 징계 위원회를 개최한다.
- 다. 병원은 폭언·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충 해결을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 라. 병원은 폭언·폭행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급휴가를 준다.
- 마. 병원은 내원 환자·보호자에 의한 각종 폭언·폭행 등의 인격모독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해당 내원 환자·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근무조건 만족도 높은 좋은 병원 만들기

- 가. 병원은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단협 제43조제8항 삽입)
- 나. 업무와 관련한 출장, 교육, 회의는 근무시간에 포함한다.(단협 제43조제9항 삽입)
- 다. 병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분석하고, 2015년 말까지 시간외근무 해결대책을 마련한다.(단협 제43조제10항 삽입)
- 라. 병원은 노사공동 TF를 구성하여 파행적인 근무개선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근무표 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단협 제43조제11항 삽입)
- 마. 노사 양측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병원의 야간근무제 및 교대근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모델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다.(단협 제43조제12항 삽입)
- 바. 병원은 주40시간 주5일제 합의 이행을 위해 토요일근무를 점차 축소한다. (삭제)

2016. 01. 19.

“갑”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

김 영 진



“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 지 현

